# 결합판매 경쟁제한성 심사 개선방안

발표자: 강 병 민

경희대 경영대학



# 목 차

제 1 장 서론: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

제 2 장 결합판매의 개념과 경제적 이론

제 3 장 통신시장 경쟁환경 및 결합판매 시장 분석

가. 이동통신 시장 나. 초고속인터넷 시장 다. 결합판매 시장

제 4 장 해외 결합판매 규제동향

제 5 장 원가에 기초한 결합요금의 경쟁제한성 판단

가. 인가지침의 체계

나. 동등접근성 심사

다. 요금적정성 심사

라. 심사 절차

마. 심사를 위한 요금-원가 측정 방법



##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

#### 가. 연구의 필요성

- ●2007.7월 내부지침 「**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**」마련으로,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할인판매가 본격 허용
  - 이후 결합판매는 괄목할 성장: 2013년말 1,554만 가구(보급율 85.3%)가 이용(2014 경쟁상황평가)
- ●동 지침의 주내용: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
  - ①요금적정성(제2조): 요금할인 등으로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를 심사
    - 1. 결합판매 전체요금 $(P_B)$  < 비용 $(C_B)$   $\rightarrow$  결합상품이윤  $\pi_B = (P_B C_B) < 0$
    - 2. 결합구성 인가역무요금 $(P_{SMP})$  < 비용 $(C_{SMP})$   $\rightarrow$ 인가역무이윤  $\pi_{SMP}$ = $(P_{SMP} C_{SMP})$  < 0

├(제5조) 요금적정성 심사의 간소화를 위한 요금할인율 기준

- 1. 결합판매 전체요금: 개별요금의 총합을 기준으로 30% 이하
- 2. 결합구성 인가역무요금: 인가 받은 요금을 기준으로 30% 이하
- ②동등접근성(제4조): 경쟁사가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결합구성 필수요소를 거절·지체·차별 없이, 적정한 도매대가[필수요소의 제공대가 > 관련 비용]로 제공받는지를 심사

⇒하지만, 동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에 매우 미흡



####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(2)

[문제1] 요금과 비용의 정의, 측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 부족: 실제 적용이 곤란

[문제2] 요금-비용 비교의 부등식은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 파악에 미흡

(예)(시장지배적) 이동통신 3회선 + (경쟁적) 초고속인터넷 결합판매: 할인율 각 10%

- ·개 별 요 금: 이동통신 4만원, 초고속인터넷 2만원
- · 원가보상율: (지배적 사업자) 이동통신 120%, 초고속인터넷 90% (경쟁사업자) 이동통신 105%, 초고속인터넷 120% 🖘 훨씬 효율적

лы	시장지배적 사업자			경쟁사업자		
구분	이통 3회선	초고속	결합판매	이통 3회선	초고속	결합판매
월수익(R)	120,000	20,000	126,000	120,000	20,000	126,000
월 원 가 (C)	100,000	22,222	122,222	114,286	16,667	130,953
수익률(R/C)	120%	90%	103%	105%	120%	96%

[문제3] 심사면제 30% 요금할인율: 요금 측면만 고려, 타당성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설정 [문제4] 결합상품 약정기간, 전환비용 차이 등에 따른 시장고착화에 대한 평가기준 부재

☞∴제도 취지보다는 심사면제 할인율 준수 여부, 결합할인의 서비스間 배부 등 형식적 절차에 치중

나. 연구목적: 상기 미비점을 보완한 결합판매의 제도적 안정장치로서, **요금 및 원가에 기초하여** 적용 가능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바람직한 심사기준을 제안



# 2. 결합판매의 개념과 경제적 동기

### 가. 결합판매의 개념과 유형

- 가. 결합판매(bundling)의 개념과 유형
- ●결합판매= 별도 판매가능한 재화 or 서비스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파는 행위
- ⇒통신결합판매: 통신서비스와 다른 통신서비스, 「방송법」제2조의 방송, IPTV를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 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4 제5호)

#### ●결합판매의 유형

- ① 결합방법 기준: (i) 계약적 결합, (ii) 상업적 결합, (iii) 기술적 결합 등
- ②소비자 선택자유도 기준: (i)순수결합, (ii)**혼합결합**, (iii)끼워팔기 등
- ③구매시기 기준: (i)동시적 결합판매, (ii)순차적 결합판매 등
- ⇒통신결합판매: 결합할인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계약적(contractual) 결합, 결합구성서비스의 개별판매도 병행하는 혼합결합(mixed bundling)임
  - •최근 각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근접함에 따라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할인을 통한다른 서비스의 추가 이용을 유도하는 순차적 결합판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(예: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을 제공하여 추가 가입을 유도)



- 나. 결합판매의 경제적 동기
- □**효율성 제고 동기**: 일반 산업에서는 비용절감, 기술혁신, 소비자에 할인혜택 등 긍정적 효과
- ⇒통신3사 모두 종합통신사로서 이미 공통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기술혁신 경쟁을 하므로, **결합판매로 인한 범위의 경제(생산비용 절감) 효과 및 기술혁신은 제한적** 
  - 주로 판촉비와 통합과금 등 가입자관리비 일부에서만 비용절감 효과 발생 (영업보고서 5-1서식)
- □**가격차별화 동기:** 이용자 지불의사에 따라 결합할인을 이용한 차별적 가격 부과로, 수익 극대화

(Adams & Yellen, 76; McAfee et al., 89; Carbajo et al., 90; Nalebuff, 2003)

- · 긍정적 효과: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소비 참여로, 사회후생 증대
- 부정적 효과: 시장세분화에 따른 경쟁완화, 단품이용자 vs 결합이용자간 차별행위, 소비자잉여 일부를 사업자 수익으로 전환
- ⇒지배적 사업자의 **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용한 공격적인 가격차별**로 후발사의 경쟁력 저하
  - 시장 성장기에는 가격차별화의 긍정적 효과 ↑, 정체기에는 부정적 효과 ↑: 심사 사업주기 고려



- □지배력 전이 동기: 지배적 상품을 기반으로 과점적 시장의 상품과의 결합판매로, 경쟁적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(Nalebuff 2005, Peitz 2008, Jeon・Menicucci 2012, Hurkens et al. 2013)

  ·가격약탈성이 미전제: 행위 진행 동안 지배적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
- ⇒①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통신사업은 지배력 전이효과가 큼: 적은 변동비 때문에, 지배력 전이 [점유율 확대]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미미한 반면에, 경쟁사의 수익성 감소는 훨씬 큼
  - ②**시장포화상태**일수록 지배력 전이에 따른 경쟁사의 매출감소효과 증가→∴지배력 전이동기 증가
  - ③시장지배적 상품과 경쟁적 상품의 관계에 따라 지배력 전이 동기에 영향

    1)상호독립적(independent): 경쟁시장 점유율 증대가 지배적 상품의 매출과 무관→강한 전이 동기

    2)대체적(예: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): 경쟁시장 점유율 증대로 지배적 상품의 매출 감소→약한 동기

    ☞이 논리를 이동통신사에 적용하면,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매력적인 지배력 전이의 대상
  - ④ **결합구성상품의 수익성**은 결합할인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행사에 영향을 줌 1)지배적 상품의 수익성이 클수록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가능한 결합할인의 크기도 증가 2)<u>경쟁적 상품의 수익성</u>이 클수록 지배력 전이를 통한 매출증대와 이에 따른 이윤획득도 증가

□지배력 유지·강화 동기: 주상품 시장의 지배력을 경쟁위협으로부터 보호("시장고착화")
(Carlton・Waldman 2002, Choi・Stefanadis 2001)

- ⇒통신결합판매: 결합할인 외에도 ①,②는 지배력 유지 & ③,④는 지배력 강화의 수단
  - ① 약정기간 추가: 결합상품 가입으로 신규 약정기간(增통 3년)이 추가→사업자 전환이 둔화
  - ②전환비용 증가: 결합상품 가입으로 전환비용(예: 마일리지 포기, 해지수수료, 단말기 교체비) 증가 →사업자 전환이 둔화(이동통신은 단말기 교체비 때문에 전환이 더욱 곤란)
  - ③ **망내통화요금 등 영향**: 이용자는 망내통화 외부성이 보다 큰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가입 (5:3:2 점유율 구조 하에서 이용자가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통화할 확률은 50% 이상)
  - ④ 전환비용의 사업자간 차이: 동일 결합상품 · 전환비용이라도, 지배적 사업자로 전환이 보다 용이 (5:3:2구조에서 SKT 1,5명, KT 2,1명[=3회선-∂,9], LGN+2,4명의 전환 필요 for 이통3회선+초고속가입)
- □가격압착 동기: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에 필요한 필수적 생산요소의 도매가격 인상으로 소매시장의 우위적 가격경쟁력→동등 효율적 경쟁사의 정상적 경쟁 불가
  - ⇒이는 비대칭적 통신결합판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, 동등접근성 이슈와 관련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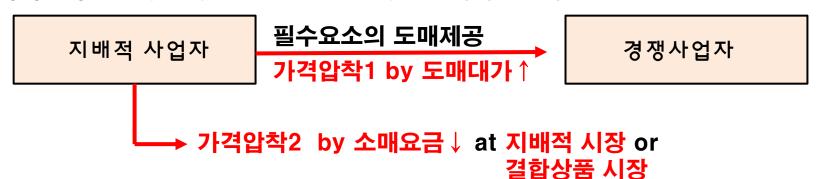
2. 결합판매의 개념과 경제적 동기(4)

## 나. 결합판매의 경제적 동기(3)

- ●[요약] 통신결합판매는 효율성 제고 등 일반적 동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,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결합판매할 개연성이 높음 - 상기 논의한 통신결합판매의 동기들과 관련 변수들은 경쟁제한성 심사의 기초가 됨
- (1) 지배력 전이 및 시장고착화: 대칭적 통신결합판매에 적용하는 요금적정성 이슈와 관련



(2) 가격압착 비대칭적 통신결합판매에 적용하는 동등접근성 이슈와 관련



# [참고]시장지배력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(요금적정성 2차적 심사 관련)

	<u></u> 변수	비고: 시장지배력 전이 등에 영향
	[+]결합할인 정도 (개별요금 대비 결합요금 차이)	·결합할인이 클수록, 지배력 전이가 용이: [+] - 또한 1)단품 vs 결합상품 이용자간 가격차별, 2)순수결합성격↑로 소비자 선택권↓ 3)시장세분화로 단품시장의 경쟁활성화 저해 ⇔반면, 보다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: [-]
	배 · 경쟁적 서비스간 관계: [+]범위 경제, -]대체적, [+]독립적	·범위의 경제가 클수록 점유율 증대가 이윤 증대: [+] ·지배・경쟁적 서비스간 관계가 독립적: 경쟁시장 점유율↑~매출증대: [+] ⇔반면, 양자가대체적: 경쟁시장 매출증대가 지배적 시장의 수익감소: [-]
지	[+]지배적사업자 MS	·점유율이 클수록 지배적 시장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결합판매가 용이: [+]
시 배 적 시 장	[+]지배적 사업자의 수익성 및 격차	·지배적 사업자의 수익성이 클수록 더 많은 결합할인이 가능하고 ·지배적 사업자와 경쟁사 간의 수익성 격차가 심할수록 지배력 전이 효과 증대: [+]
	[+]시장 포화정도	·시장포화로 매출증대가 힘든 경우, 지배력을 이용한 결합판매 동기 증대: [+]
	[+]시장규제 강도	·단통법 등 시장규제 강도가 클수록 이를 우회하기 위한 결합판매 동기 증대: [+]
전	[+]규모의 경제효과	·규모의 경제효과가 클수록 결합할인에 따른 이윤감소 보전이 용이: [+]
이대상시장	[+]시장의 포화정도	·시장포화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침투는 경쟁사 점유율 감소로 직접 연결: [+]
	[-]경쟁도/[+]수익성	·지배력 전이시장의 경쟁도가 클수록 결합할인에 따른 이윤감소 보전이 곤란: [-] ·지배력 전이시장의 수익성이 클수록 결합할인에 따른 이윤감소 보전이 용이: [+]
	[-]경쟁사의 효율성	·경쟁사 효율성이 클수록 대응력도 커서, 지배적 사업자의 많은 결합할인이 요구: [-]
	[+]지배력 남용도	·지배력 전이로 인한 매출비중 or 행위지속기간이 클수록, 경쟁제한성 효과증대: [+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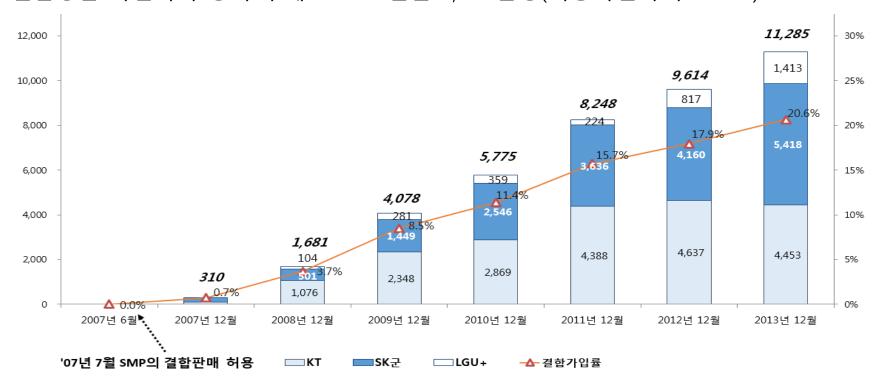
- ●이동통신시장은 2014.6월말 가입자 5,567만 명(보급률 약 110%)의 포화단계로 진입
  - SKT점유율이 10년 이상 고착화된 5:3:2의 비경쟁적 시장☜세계 최고수준의 1~2위 사업자간 M5격차
    - · '00~'13년 누적초과이윤: SKT 21.7조, KT 1.6조, LGU+ -3.1조원(비율: 93% : 7% : -0%)

#### ⇒SKT는 이동통신 가입자 기반의 결합판매로 현재의 지배력 유지 및 전이 동기가 충분함

- ①지배력 방어동기 for 현재 초과이윤을 계속 향유: LTE도입으로 데이터중심 요금전환,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경쟁 제한, MVNO 활성화 등 점유율 위협상황 ~ 요금인하보다 결합판매 경쟁
  - · 결합판매는 전환장벽(예: 약정기간 추가)을 높여 기존가입자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함으로써, 현재의 점유율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가능
- ②지배력 전이동기 for 유선시장 점유율 증대 & 이통시장 가격경쟁을 억제: 자회사 SKB의 유선 상품 재판매로 SKB의 수익성 및 점유율 증대에 기여
  - · 결합할인을 통한 유선시장점유율 증대→경쟁사 KT · LGU+ 수익성 악화→이통시장 경쟁 억제
- <u>▼ 포화상태 유무선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동기는 용이하게 실현 가능</u>
  - 1)초과이윤 쏠림으로 주요 경쟁사인 KT와 LGU+보다 적극적인 결합할인 제공이 가능
  - 2)개인용, 이동성 등으로 유선보다 편리한 일방향 대체적 통신수단: 유선결합판매가 확장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으며, 이동통신의 매출감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적음

- ●초고속시장: 가입자 1,900만명(보급률 약 105%)의 포화상태 ⇔ 최근 매출은 감소
  - 점유율: KT 804만명(42.4%), LGU+ 299만명(15.8%), SKB 279만명(14.7%), SKT재판매 190만명(10.0%) ⇔매출기준 점유율 6.3%: 공격적 결합할인판매
- ☞SKT재판매: 2013년 가입자순증의 83%, 14년 상반기 76% 차지 등 4년만에 점유율 10%로 확대
- ●SKB는 보다 큰 영업수익 감소(전년대비 -3.2%)에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20.2% 증가
  - 반면, 경쟁사는 SKT의 공격적 결합판매(초고속인터넷 포함)로 수익성이 악화
    - · LGU+와 대부분 MSO: 영업이익 감소 or 적자 전환, KT: 흑자지만 전년대비 54% 감소
- ⇒다음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은 SKT에게 매력적 결합대상☜최근 CJ-헬로비전 인수가 이를 반증
  - ①유선통신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음
  - ②망구성이 거의 동일한 VoIP, IPTV포함 결합판매로 **사업영역 확장 및 PSTN사업자와 경쟁**가능
  - ③전송속도, 단말기 등에서 기능 차이가 있는 초고속인터넷과 독립재 성격의 IPTV 등의 결합 판매로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충성도 제고로 **자신의 점유율 유지에 기여** 가능

- ●시장포화상태 및 LTE 본격화로 이동전화 중심의 순차적 결합판매 경쟁이 치열
  - **이동통신 가입자를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이 결합된 상품판매가 활발**: 이동통신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가 증가 추세로 2013년말 1,129만명(이통가입자의 20.6%)



☞SKT의 결합상품 형태를 보면, 가입기간이 장기일수록 보다 많은 결합할인 제공으로, 점유율 방어 전략에 결합판매를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



#### 3. 통신시장 경쟁환경 및 결합판매 시장 분석(4)

#### 다. 결합판매 시장(2)

#### ●SKT의 이통가입자 기반의 결합판매는 지배력의 방어 및 전이 효과를 보임

①지배력 방어: SKT 결합상품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동통신 점유율 50.0%에 수렴 양상

②지배력 전이: 경쟁사 KT, LGU+, SO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모두 하락 or 답보 상태인 반면, SKT재판매 점유율은 급속 확대(초고속가입자 순증시장에서 70% 이상 점유)

⇒부당한 경쟁사의 수익성 악화 초래 및 이통시장에서 점유율 방어 ·유지에도 상당한 효과

#### SKT의 이통시장 지배력 방어

#### 100% 80% 68.8% 60% 50.5% 50.5% 50.6% 50.6% 50.3% 50.6% 50.0% 40% 48.0% 44.1% 35.5% 29.8% 20% ◆-SK군 이동전화 결합 점유율 -O-SKT 이동전화점유율

#### SKT의 초고속시장으로 지배력 전이

F	구분	'09년	'11년	'12년	'14년	'15년 5월	09대비 △MS
	KT	6,953 (43%)	7,823 (44%)	8,037 (44%)	8,129 (42%)	8,207 (42%)	-0.3%
S K	SK T	0 (0.0%)	898 (5.0%)	1,326 (7.3%)	2,061 (11%)	2,195 (11.3%)	11.3%
群	SK B	3,847 (24%)	3,294 (18%)	3,068 (17%)	2,750 (14%)	2,732 (14%)	-9.5%
L	G +	2,522 (15%)	2,810 (16%)	2,743 (15%)	3,014 (16%)	3,077 (15.8%)	0.4%
	SO	3,027 (19%)	3,035 (17%)	3,079 (17%)	3,209 (17%)	3,214 (16.5%)	-2.0%

# 4. 해외 결합판매 규제 동향

- ●EC Guidance와 미국 판례 · AMC: 결합상품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 절차는 유사
- ①양자 모두 유효가격-증분원가 비교로 1차적 경쟁사 배제가능성을 판단(Safe Harbor Test)
  - ・유효가격(effective price): 증분요금[=경쟁상품 가격 모든 결합할인]으로 산정
  - 증분원가(incremental cost): 추가적 결합원가[=경쟁상품 원가 결합비용절감]로 산정
- ②양자 모두 Safe Harbor test를 미통과시, 2차적으로 시장특성,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
- ③양자(EC Guidance 2009, 미국 PeaceHealth판례 2007) 모두 결합할인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손실회복(recoupment)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: 약탈적 요금 판단기준과 구별
- ⇒[1단계]심사대상의 시장지배력 여부 판단
  - →[2단계]가격기반 경쟁제한성 판단: 1)이윤희생심사: [가격 〈 평균회피비용(AAC)]이면 반경쟁적, 2)동등효율 경쟁제한심사: [가격 〈 LRAIC]이면 반경쟁적 가능
  - →[3단계]경쟁제한적 기타요소 고려 → [4단계]효율성 측면 고려
- ●각 통신규제기관: 소매요금 사전규제 완화와 별도로,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결합상품 경쟁제한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



●[기본방향]EC Guidance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지침을 규제목적 부합성, 체계성, 객관성, 적용가능성 등을 갖추고 단계적 심사접근법을 도입

- ●[지침체계]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개선
- ①현행 내부지침을 고시로 법적 지위를 강화 ☜심사의 투명성 개선에 기여
- ②지배적 사업자의 **모든 결합판매 경쟁제한성 심사를 명시 ☜사업법 28조: 요금인하는 신고**
- ③조항체계 정비: 지침상 혼재되어 있는 요금적정성과 동등접근성 심사조항들을 구분하고, 심사 목적 및 용어정의, 절차 등 기타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 ☜지침의 체계성 강화
  - 1) **동등접근성 심사**: 경쟁사가 지배적 사업자와 동일·유사한 결합상품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아 구성하는 **비대칭적 결합판매**에 적용
  - 2) 요금적정성 심사: 경쟁사의 동등결합판매가 가능하게 된 대칭적 결합판매에 적용
    -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**지배력 전이와 강화 여부** 등의 판단이 심사의 주 목적



- ●**동등접근성 심사**: 경쟁사가 지배적 사업자와 대등한 결합상품의 제공가능여부를 심사
  - **심사목적**: 경쟁사가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비대칭적 결합구성상품을 **거절·지체·차별 없이**, 적정한 도매대가로 제공받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
  - 경쟁사가 결합구성상품을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경우, 그 도매대가가 부적정하다면 관련 도・소매시장 및 결합시장에서의 가격압착이 우려되므로 다음 imputation test가 필요:
    - (1)지배적 상품의 도매시장 가격압착: 도매가격(WP<sub>SMP</sub>) > 도매원가(WC<sub>SMP</sub>)...........①
    - (2)지배적 상품의 소매시장 가격압착: 소매가격( $P_{SMP}$ ) < 도매가격( $WP_{SMP}$ )+소매전환원가( $RCC_{SMP}$ )...  $\square$
    - (3)지배적 상품 포함 결합시장 가격압착: 결합가격(P<sub>B</sub>) < 도매가격(WP<sub>SMP</sub>)+소매전환원가 (RCC<sub>SMP</sub>) + 결합전의 경쟁적 상품원가 (C<sub>O</sub>) 결합원기절감(CS<sub>B</sub>)...③
  - ☞1. ①&②부등식: 지배적 상품의 도소매시장에서 **수직적(이중적) 가격압착**에 대한 테스트
    - 2. ①  $WC_{SMP}$  를 ②&③  $WP_{SMP}$  에 대입하면 ②는 [인가역무 요금< 원가], ③은 [결합상품 요금< 원가] : 이는 현행 지침의 요금적정성 심사기준  $\rightarrow$  : 지침상 기준은 실제 동등접근성 심사의 판단기준!!!

- ●**요금적정성 심사**: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EC Guidance와 같은 단계적 접근법을 적용
- 심사목적: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및 유지·강화(시장고착화) 여부를 판단
  - 계열사간 거래로 결합판매하는 경우 내부보조도 추가적으로 심사

- □**요금-원가 비교에 의한 1차적 심사**: 지배력 전이 발생여부를 판단
- 전이대상 경쟁적 상품의 증분수익(incremental revenue)과 증분원가(incremental costs) 비교:

유효가격( $P_E$ : Effective price) < 증분원가( $C_E$ : Effective cost) .............④

- $\checkmark P_E$ :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적 상품을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위당 추가수익인 유효가격으로, [경쟁적 상품의 결합前 가격( $P_C$ ) 결합할인( $DC_R$ )]으로 산출
- $\checkmark$   $C_E$ :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적 상품을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위당 추가원가인 증분원가로서, [경쟁적 상품의 결합前 원가( $C_C$ ) 결합고유 비용절감( $CS_R$ )]으로 산출
- $\Rightarrow$  결합요금  $P_B = P_{SMP} + P_C -$  결합할인(DC<sub>B</sub>) & 결합원가  $C_B = C_{SMP} + C_C -$  결합원가절감(CS<sub>B</sub>)이므로, 부등식④는  $\left[\pi_B = P_B C_B : 결합상품 이 윤\right] \langle \left[\pi_{SMP} = P_{SMP} C_{SMP} : 인가역무 개별이 윤\right] ...⑤$

#### ☞상기 부등식에 대한 평가와 의미:

- 1. 부등식④ [증분요금 < 증분원가]: 지배적 사업자의 기존가입자가 경쟁상품을 결합하여 구입하는 경우 추가적 가격부담(즉 증분요금)을 고려(이내찬 2013)하고, 사업자에는 증분원가만 발생하므로, 지배적 상품 가입자 기반의 순차적 결합판매로 인한 지배력 전이 개념에 충실한 심사기준
  - •미국 법원판례 · AMC, EC Guidance, 이내찬(2013)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에도 부합
- 2. 부등식⑤ [결합이윤 < 인가역무 개별이윤]: 결합판매로 지배적 상품의 기존 이윤을 감소시키는 영업행위 (즉 지배적 이윤으로 경쟁상품 보전)는 지배력 전이 목적 이외 합리적 행위가 아님
  - NERA(2003), Ofcom(2004) 등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에도 부합
  - [결합할인 < 경쟁적 상품의 개별이윤+결합판매로 인한 원가절감]인 경우 위법 판정

#### ☞부등식⑤ [결합이윤 < 인가역무 개별이윤]과 현행 지침상 요금적정성 심사기준 비교:

- [지침 1호] 결합요금 $(P_B)$  > 결합원가 $(C_B)$   $\rightarrow$  결합판매이운  $\pi_B = (P_B C_B) > 0$
- [지침 2호] 인가역무요금( $P_{SMP}$  ) > 인가역무원가( $C_{SMP}$  )  $\rightarrow$ 인가역무이윤  $\pi_{SMP}$  = ( $P_{SMP}$   $C_{SMP}$  ) > 0
- $\Rightarrow$ 상기 제1,2호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[결합이윤  $\pi_B$  < 인가역무이윤  $\pi_{SMP}$ ]이 가능!
  - <u>∴지침상 현행 요금적정성 심사기준은 시장지배력 전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없음Ⅲ</u>

- □**요금-원가 이외의 변수를 고려한 2차적 심사:** 상기 요금-원가 Safe Harbor test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, 요금-원가외의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요금적정성을 최종 판단
  - 요금-원가 외의 기타요소들: 제2장에서 논의한 변수들

- ●심사간소화 조항 폐지/축소: 30% 결합할인까지 경쟁제한성 없음(Safe Harbor Zone)으로 간주함은 결합판매를 통한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대부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
  - 1)요금에만 기초한 심사로서, 인가지침 요금-비용 심사기준보다 훨씬 열위적
  - 2)상기 언급한 요금, 비용 이외의 다양한 기타변수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음
  - 3)결합요금과 인가역무요금을 구분하여 각 30% 할인기준의 심사는 실효성도 없음: (예)무선3 회선+초고속 판매: 초고속을 '무료'로 인식 or 모든 결합할인을 경쟁상품에 배분하여 판촉활동
  - 4)서비스별 원가보상율을 보면, 30% 요금할인은 약탈적 가격에 근접한 전략임
- ⇒∴본 □□□□□□□□□: 행정편의상 본 조항을 유지한다면, 경쟁적 상품의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, 심사면제 할인율의 대폭 축소가 필요함(10% 이하)

- □[신설] 결합상품에 의한 시장고착화 심사: 앞의 지배력 전이 심사와는 별도로, 모든 인가대상 결합상품에 대하여 시장고착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변수들(☜째2장에서 논약)을 심사함으로써,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
  - ①[+]결합상품의 추가적 약정기간
  - □ [+]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 유지·강화에 유리한 요금제도(예: 망내 무료통화) 등
  - ③[+]결합상품의 추가적 전환비용
  - ④[+]전환비용의 사업자간 차이 ☜이는 점유율 차이에서 비롯
- □[신설]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추가적 심사: 지배적 사업자가 계열사로부터 중간재 생산요소 (예: SKB의 초고속)를 도매제공 받아 결합상품 구성시 [도매대가=도매원가]의 여부를 심사
  - 1)<u>원가보다 저렴한 도매대가인 경우</u>: 결합판매 이윤증가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할인 제공능력이 증대되어 지배력 전이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됨
  - 2)<u>원가보다 높은 도매대가인 경우</u>: 결합판매로 지원(내부보조)을 받는 계열사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경쟁사업자와의 경쟁구도 왜곡이 발생

#### ●요금-원가의 비교와 결합상품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체계적·단계적 심사절차

- ① **동등접근성 심사(replicability test)**: 비대칭적 결합판매의 경우 (필수구성요소의 관점에서) 가격압착이 없이 사업자간 대등한 결합상품의 구성이 가능한가를 판단
- ② **요금적정성 심사**: 결합판매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(및 유지·강화)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
  - 1)일차적으로 경쟁상품의 유효가격과 증분원가를 비교(effective price-cost test)
    - .[유효가격 < 변동원가]이면 약탈적 가격으로 위법으로 판단
    - .[유효가격 < 증분원가]이면 아래 2)의 심사를 수행
    - .[유효가격 > 증분원가]이면 시장지배력 전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봄
  - 2)결합판매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주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판단
- ③ **시장고착화 심사**: 결합상품의 약정기간, 전환비용 등을 고려한 시장고착화의 가능성과 효과를 판단·심사함으로써 결합요금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
- ※한편, 계열사간 거래로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계열사간 내부보조 심사를 진행함

#### 5. 결합판매 경쟁제한성 심사 개선방안(8)

## 마. 심사를 위한 요금-원가 측정 방법

- ●요금항목 산정 : 결합할인(DC<sub>B</sub>)은 이용약관에 주어지므로, 결합요금(P<sub>B</sub>)= P<sub>SMP</sub> + P<sub>C</sub> DC<sub>B</sub>
- 심사요금기저로서 이용약관요금 적용: 약관요금은 결합판매前 가격으로서 심사기저로 적합
- 대표요금: 약정할인을 반영한 약관상 요금들을 가입자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
  - ⇒**유효가격(P<sub>E</sub>)=** 경쟁적 서비스의 대표요금(P<sub>C</sub>) 결합할인(DC<sub>B</sub>)
    - = 결합요금( $P_B$ ) 지배적 서비스의 대표요금( $P_{SMP}$ )
- ●원가항목 산정 : 유일한 가용자료인 영업보고서를 기초로, 결합원가( $C_B$ )=  $C_{SMP}$  +  $C_C$   $CS_B$  where  $CS_B$ : 당해 결합상품 고유의 원가절감으로서, 당해 사업자가 제출하고 정부가 확인
  - $\Rightarrow$  증분원가( $C_E$ )= 경쟁적 서비스의 원가( $C_C$ ) 결합원가절감( $CS_B$ )
    - = 결합원가( $C_B$ ) 지배적 서비스의 대표원가( $C_{SMP}$ )

[참조]	가격(요금)	원가
지배적상품	.(결합前) 인가역무 요금(P <sub>SMP</sub> )	.(결합前) 인가역무 원가(C <sub>SMP</sub> )
결합구성	.(결합前) 경쟁상품 요금(P <sub>C</sub> )	.(결합前) 경쟁상품 원가(C <sub>C</sub> )
경쟁상품	⇒유효가격: P <sub>E</sub> = P <sub>C</sub> - DC <sub>B</sub> = P <sub>B</sub> - P <sub>SMP</sub>	$\Rightarrow$ 증분원가: $C_E = C_C - CS_B = C_B - C_{SMP}$
결합상품		. 결합원가( $C_B$ ) = $C_{SMP}$ + $C_C$ - $CS_B$ (결합원가절감)

## ●요금과 원가의 비교를 위한 측정

- (1)대표요금: 월별/요금제별/약정할인별 가입자 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
- 영업보고서상 원가에 대응되는 수익은 요금수익뿐만 아니라, 부가서비스수익, 접속료수익, 국제정산수익,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, 내부거래수익, 자가소비사업용수익, 기타 영업수익도 포함하므로 [동 수익=원가]의 가정 하에 동 수익액을 대표요금 및 대표원가에서 제외
- (2)대표원가(가입자당 월 원가): 대표요금과 대응하도록 가입자당 월 평균원가로 산정
  - 대표원가= [영업보고서 상 서비스원가 부가서비스수익, 접속료수익, 국제정산수익,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등 당해 서비스 일반요금과 관련 없는 영업수익] / 윌별 가입자수의 총합

※도매제공 대가: 동등접근성 심사의 인가역무의 도매가격은 도매제공기준 제23조 준용 · 경쟁상품의 계열사 도매가격은 정부에 신고한 대가나 이용약관상 대가를 이용